

- 외국인관광 지정택시 업무범위 규제 해제 청원 -

# 심 사 보 고 서

접수 번호	72
----------	----

2017년 9월 1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 가. 청 원 자 : 서울시 용산구 안중태 외 119명
- 나. 소개의원 :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1선거구, 교통위원회)
- 다. 접수일자 : 2017년 8월 11일
- 라.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 마. 상정일자
  -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7년 9월 1일 상정·의결)

## 2. 청원요지

-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은 물론 서울거주 외국인 등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09년 5월부터 외국인관광택시(International Taxi)로 357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스마트택시 소속 120대는 업무범위 제약으로 인해 외국인만 태워야만 하는 상황임
- 이로 인해 내국인들에 대한 승차거부 오해, 승객 탑승시 국적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의 불친철 오해 및 호텔 등에서의 장기간 대기 등 여러 가지 민원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바, 다른 외국인 관광택시가 내외국인을 동시에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주)스마트택시도 동일하게 내국인을 태울 수 있도록 업무범위 규제 해제를 청원함

### 3.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

- 2017년 6월 30일 현재 외국인관광택시는 총 377대가 지정되고 그중 (주)서울스마트택시는 120대 모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외국인관광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는 한국인 외국인 모두 승차가 가능하지만 (주)서울스마트택시는 업무범위가 외국인한정으로 되어 있어 외국인만 구분하여 승차시켜야하므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국인, 외국인 구분없이 탑승 가능하도록 규제를 해제하여 줄 것을 청원함

### 4. 참고사항

#### 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주)서울스마트 택시는 일반영업을 할 수 있는 개인·법인 택시와 달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에 의거 택시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해 유엔군전용(주한미군 군속 및 그 가족에 한함)과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하여 영업토록 면허가 발급되었으며 일반영업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할 경우 당초 허가된 한정 면허 취지에 맞지 않으며 또한 택시 총량제로 감차를 하고 있는 우리시 택시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특혜성 시비 및 이해관계인(개인·법인택

시 조합, 노조 등)의 영업손실 등에 따른 민원 발생 등으로 청원인의 택시 업무범위를 해제하는 것은 어려움

## 5.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 가. 개요

-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및 서울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교통편의 및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2009년 5월 외국인 관광택시 (International Taxi)를 도입하여 현재 357대를 운영하고 있음
- 이 중 일반면허를 가진 개인 및 법인택시 237대는 외국인은 물론 한국인의 탑승도 가능하나 한정면허인 (주)서울스마트택시 소속 120대는 한국인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주)서울스마트 택시의 업무범위를 다른 외국인 관광택시처럼 한국인도 태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주)서울스마트택시는 1962년 6월 최초사업자의 영업 개시 및 ‘관광공사’ 운영 이후 1973년 7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조치 일환으로 건양기업이 양수받았고, 1996년 9월 ‘월드컵아리랑관광(주)’에서 양수하였으며 2008년 11월 현재 상호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sup>1)</sup> 및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2조<sup>2)</sup> 등에서

---

1)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서울스마트택시는 1962년 최초 영업 시작부터 주한유엔군을 운송하는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음

※ 참고 : (주)서울스마트 현황 및 주요 경과

**■ 주요 현황**

- 대표자 : 유철선·안종태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89-5
- 면허대수 : 120대
- 업 종 : 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

**■ 주요 경과**

- 1962. 6.13 : 「위커힐」 택시영업부 발족('62. 3. 16 교통부장관의 명으로 발족) 후아리랑택시로 변경
- 1963. 6. 5 : 관광공사에서 위커힐택시부를 인수하고 운수사업소로 개칭
- 1973. 7. 5 : 건양기업에 불하
- 1996. 9.19 : 월드컵아리랑관광(주)에서 양수
- 2008.11.19 : (주)서울스마트로 상호 변경

○ 서울시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은 물론 서울거주 외국인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5월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120대 택시를 선발하여 ‘외국인 관광택시’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한정면허인 (주)서울스마트택시 120대를 포함하여 총 357대의 ‘외국인 관광택시’를 확대·운영하고 있음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당초 유엔군을 대상으로 하던 (주)서울스마트택시의 업무범위를 ‘09년 및 ’10년에 ‘외국인 관광택시’까지 확대하

---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였으며 '11년<sup>3)</sup>에는 (주)서울스마트택시 전체 120대를 '외국인 관광 택시'로 지정하였음

※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현황 : 357대(법인 177대, 개인 180대)

법인택시			개인택시			
소계	일반	스마트택시	소계	중형	모범	대형
177대	57대	120대	180대	137대	18대	25대

- 결국 전체 외국인 관광택시 357대 중에서 한정면허를 받은 (주)스마트택시 소속 120대는 “유엔군과 외국인”만<sup>4)</sup> 태워야 하고, 나머지 237대의 일반택시는 외국인과 한국인을 가리지 않고 태울 수 있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서울스마트택시 소속 회사가 한국인을 태울 경우 승객 탑승 전에 국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차거부 오해 및 한국인을 동양계 외국인으로 혼선하여 탑승시키는 과정에서의 부정승차 시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주)서울스마트택시의 주요 고객인 유엔군에 대한 운송업무에 일반 택시들이 참여하여 업무범위가 실질적으로 축소되었고,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완료시에는 심각한 영업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동 청원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임

3) '09.12.21 : 한정면허택시 중 49대를 외국인 전용택시 지정, '10. 4.29 : 한정면허택시 중 80대를 외국인 관광택시 지정, '11.10.07 : 기존 한정면허택시 120대를 '외국인 관광택시'로 지정

4) 주한유엔군 및 가족, 군속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수송이 업무범위이며,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는 내국인이 동승하거나 가이드 등의 안내로 인한 내국인이 동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동 청원과 관련하여 (주)서울스마트택시가 유엔군과 외국인 관광객을 한정하여 면허가 발급되었다는 점에서 (주)서울스마트택시의 업무범위 확대 이유가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sup>5)6)</sup>이 있었고, 현재 서울시가 택시감차 정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서울스마트택시 업무범위 확대가 택시 증차로 비취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

---

5) 2013년 6월 4일

6) 동두천시 및 평택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있었으나 한정면허를 확대하는 것은 이유 없다는 사유로 모두 패소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붙임1**

## [붙임1]

# 채택의견서

- 청원명 : 외국인관광 지정택시 업무범위 규제 해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도시교통본부)
- 채택의견
  - 동 청원은 일반면허를 가진 개인 및 법인택시는 외국인은 물론 한국인의 탑승도 가능하나 한정면허인 (주)서울스마트택시는 한국인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주)서울스마트 택시의 업무범위를 다른 외국인 관광택시처럼 한국인도 태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바라는 것임
  - 동 청원은 (주)서울스마트택시 소속 회사가 한국인을 태울 경우 승객 탑승 전에 국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차거부 오해 및 한국인을 동양계 외국인으로 혼선하여 탑승시키는 과정에서의 부정승차 시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주)서울스마트택시의 주요 고객인 유엔군에 대한 운송업무에 일반 택시들이 참여하여 업무범위가 실질적으로 축소되었고,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완료시에는 심각한 영업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인 바,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

##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72	접수연월일	2017. 8.11
청원인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성명	안종태 외 119명	
소개의원	신원철	소속위원회	교통
건명	외국인관광 지정택시 업무범위 규제 해제 청원		
소관위원회	교통		
<p>○2017년 6월 30일 현재 외국인관광택시는 총 377대가 지정되고          그중 (주)서울스마트택시는 120대 모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외국인관광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는 한국인 외국인 모두          승차 가능하지만, (주)서울스마트택시는 업무범위가 외국인한정으로 되어          있어 외국인만 구분하여 승차시켜야하므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국인, 외국인 구분없이 탑승 가능하도록 규제를          해제하여 줄 것을 청원함</p>			